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원태 의원 대표 발의)

| | |
|----------|------|
| 의안 번호 | 1366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10월 16일

발 의 자: 김원태, 김경훈, 김길영,
김동욱, 김영철, 김재진,
김지향, 김태수,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민병주,
박수빈, 신복자, 옥재은,
유만희, 윤기섭, 이봉준,
이숙자, 이희원, 최민규,
허 훈, 홍국표, 황철규
의원(24명)

1. 제안이유

-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면허 이상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만 16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게 하였으나, 만 16세 이상 학생 이용자의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도 및 교육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학생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개인형 이동장치”, “인명보호장구” 정의 규정(안 제2조제5호 제6호 신설)
- 나. 협력기관으로 “도로교통공단” 규정(안 제3조제1항제5호 신설)
- 다. 바퀴달린 놀이기구 중 "전동킥보드(PM)"를 삭제(안 제8조제1항제2호)
- 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지도 등 규정(안 제8조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아동복지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인명보호장구”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승차용 안전모를 말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도로교통공단
6. 교통안전 관련 단체

제8조제1항제2호 중 “인라인스케이트, 전동킥보드(PM)”를 “인라인스케이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 운행 및 인명보호장구 착용 지도
5.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 준수에 관한 지도
6.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의 위험성 및 예방대책 안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
| <p>1. ~ 4. (생략)</p> <p>5. <u>교통안전 교육시설 및 관련 단체</u></p> <p><신설></p> <p>② (생략)</p> <p>제8조(교통안전교육) ① 학교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p> <p>1. (생략)</p> <p>2. 바퀴달린 놀이기구(킥보드, <u>인라인스케이트, 전동킥보드(PM)</u>, 바퀴달린 신발 등을 말한다) 안전사용 및 보호 장구 착용 지도</p> <p><신설></p> <p>3. (생략)</p> <p><신설></p> <p><신설></p> <p>4. (생략)</p> <p>② (생략)</p> | <p>1. ~ 4. (현행과 같음)</p> <p>5. <u>도로교통공단</u></p> <p>6. <u>교통안전 관련 단체</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8조(교통안전교육) ①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인라인스케이트</u>----- ----- -----</p> <p>3. <u>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 운행 및 인명보호장구 착용 지도</u></p> <p>4. (현행 제3호와 같음)</p> <p>5. <u>교통법규 및 기초질서 준수에 관한 지도</u></p> <p>6. <u>교통사고 등 안전사고의 위험성 및 예방대책 안내</u></p> <p>7. (현행 제4호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
|---|---|

문서번호

2023100600000032

비대상사유서

요청인 : 김원태 의원

담당 : 오희선 과장
이정수 팀장
박지영 주무관

접수일 : 2023.10.06.

회신일 : 2023.10.11.

내용문의 : 02-2180-7952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목 차

1. 판단 근거
2.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정의) 제5호 및 제6호와 제8조(교통안전교육) 제1항 제3호를 신설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19호나목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의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여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3조(책무) 제1항 제5호의 개정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의 신설, 제8조(교통안전교육) 제1항 제3호~제6호의 신설을 통해 교통안전 교육의 범위를 명확화하는 내용으로 서울시교육청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2. 작성자

| | |
|--------|------------------------------|
| 시의회사무처 | 재정분석담당관 |
| 담 당 관 | 오희선 |
| 추계세제팀장 | 이정수 |
| 주 무 관 | 박지영 |
| | ☎ 02-2180-7952 |
| | e-mail : 7magic7@seoul.go.kr |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시 첨부하지 않는 자료입니다.